

다. 손해배상(산)¹⁵²⁾

❖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65,681,314원, 원고 오○○에게 3,158,000원,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①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직장이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기간만료 후에는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의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소극적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 61703 판결)

❖ 손해배상(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207,389,000원, 원고 박○○에게 7,000,000원, 원고 김○○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중첩관계가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사용한다.¹⁵³⁾

15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1775호)

153) 중첩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177면 이하 참조

☐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임○일에게 107,675,384원 및 위 돈 중 96,943,587원에 대하여는 2009. 10. 10.부터, 나머지 10,730,797원에 대하여는 2010.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김○이에게 3,000,000원, 원고 임○삼, 임○사에게 각 1,0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애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 손해배상(산)(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41,328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 손해배상(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에게 40,482,999원, 원고 최○○에게 39,482,999원, 원고 최○○에게 26,988,666원, 원고 김○○에게 1,500,000원, 원고 최○○, 최○○, 최○○, 최○○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에 있어 고압선의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 해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불법행위책임

이 있다고 한 사례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에 있어 고압선의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 거리를 초과한다 해도 전기 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로서는 그 이격거리가 1.2미터에 불과하고 건축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대부분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더구나 공사 수급자로부터 감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문의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공사현장에 그 소속직원을 보내어 감전사고 발생의 가능성 유무를 파악하여 공사 수급자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손익수에게 174,234,223원, 원고 이○○에게 3,000,000원, 원고 손○○, 손○○에게 각 1,000,000원, 원고 김○○, 손○○, 손○○에게 각 500,000원 및 그중 원고 손익수의 158,762,690원과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금원에 대하여는 2007. 12. 2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원고 손익수의 나머지 41,926,318원에 대하여는 2007. 12. 27.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①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손해의 지급청구방법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②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③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청구요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④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 1991. 5. 14. 선고 91다 8081 판결)

❖ 손해배상(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1, 2목록 청구취지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26614 판결)

❖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정○호에게 41,069,385원, 원고 이○숙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9. 1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①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②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 손해배상(산)(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447,029원 및 이에 대한 2016. 7. 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①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장해보상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판결, 공2000하, 1501)